

# ESCO등록기준 및 ESCO관리규정 변경

작년 8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었다.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게 된 취지 및 주요 개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공고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허수영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실 ESCO팀장)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개편

그간 분석한 기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 개편 전 ESCO 등록기준 >

#### ■ 1종 (공장생산설비 분야)

- 장비 : 가스분석기, 적외선열화상장치 등 25종(28대)
- 자산 : 법인(자본금 기준 2.5억원), 개인(자산평가액 기준 3억원)
- 기술인력 : 총 4명(기술사 1명, 기사 2명, 기능사 1명)

#### ■ 2종 (건물 분야)

- 장비 : 가스분석기, 적외선열화상장치 등 24종(24대)
- 자산 : 법인(자본금 기준 1.5억원), 개인(자산평가액 기준 2억원)
- 기술인력 : 총 4명(기술사 1명, 기사 2명, 기능사 1명)



우선, 동일한 설비라도 투자소재지(공장생산설비, 건물)에 따라 등록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간 약 60%에 상당하는 ESCO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하고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ESCO 투자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와 같이 공장생산설비 및 건물분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한 사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CO 등록기준이 제정된 1992년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 등록기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ESCO 등록의 핵심인 장비, 기술인력 및 자산 등의 주요 내용은 지난 1999년 개정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ESCO 사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전문 연구용역 수행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편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편 후 ESCO 등록기준 〉

구분		1종	2종(열)	2종(전기)
자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기술사: 2명 이상 기사: 5명 이상 기능사: 1명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기사: 3명 이상 기능사: 1명 이상	기술사: 1명 이상 기사: 3명 이상 기능사: 1명 이상
장비		가스분석기 등 15종	가스분석기 등 11종	전력분석계 등 12종



우선 ESCO 등록분야를 변경하였다.

기존 투자소재지(공장생산설비, 건물) 기준의 등록구분 방식에서 투자설비(열 분야, 전기 분야)를 중심으로 변경하여, 1종은 열 및 전기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2종은 전문분야에 따라 2종(열)과 2종(전기)로 세분화하였다.

위와 같이 투자설비를 중심으로 등록을 구분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 필수적인 계측장비와 기술인력 만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ESCO 투자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4인 기준인 기술인력을 상향 조정하여 ESCO의 전문성 확보를 기하는 한편, 에너지관리 진단사 자격을 기술인력 대체 자격에 포함하여 ESCO의 진단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ESCO사업의 등록구분에 따라 해당 분야별 필수적인 계측장비만을 구비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현실성이 없거나 현재 일반화된 장비는 제외하고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신규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금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개편에 따라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ESCO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다만, 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놓쳐서 등록이 취소되는 낭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에 등록하기를 권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개정 공고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월 10일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을 개정 공고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CO투자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일부 보완하였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 개편 내용에 맞추어 ESCO 등록구분에 따른 적용기준을 개정하였다.

둘째, 기존 규정상 ESCO 영업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매년 1월 31일까지였는데, 검토 결과 대부분 기업체의 사업년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며 전년도 회계결산을 법인세 신고일정

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기한을 현실화하여 3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영업보고서 제출 시 등록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ESCO 투자사업 중 성과보증계약 체결 시 기존 목표 절감량(액)의 9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금번 규정 개정시 과감히 삭제하여 ESCO와 에너지사용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성과보증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모하였다.

넷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부칙에서 명시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미 신청할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도 이에 부응하여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더욱 내실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절감사업 아이টে를 적극 발굴하여 ESCO사업이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부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 \_ 84p 참고

